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565 |
|----------|-------|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안산시가 김홍도 출생지로서 정통성 있는 김홍도 도시 위상 제고
-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확보
- 김홍도 육성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도시 안산의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관한 사항(안 제1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보조금 지원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사무의 위탁과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사전예고(결과) : 붙임 4(의견 5건)

- 입법예고 : 2021. 1. 19. ~ 2. 8.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 5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발전 시켜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홍도 도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김홍도 도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김홍도 도시 기반 조성에 사항
4.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김홍도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사업) 시장은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2. 김홍도 관련 축제 및 행사성 사업
3. 김홍도 관련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4.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시장은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김홍도 관련 연구 기관·단체, 대학 등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관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김홍도 육성사업 홍보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관광과 |
|-------------|----------------|------------------|
| 임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관광과장 박종홍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김홍도팀장 이선직 |
|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은선 (행정 3511) |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 안 번 호 | 8-565 |
|------------|-------|

제안년월일 : 2021년 10월21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회

□ 수정이유

-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 도시 안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보다는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임.

□ 주요골자

- 조문 삭제 (안 제6조, 안 제7조)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u>제6조(전문가 자문) ① 시장은 김홍</u> <u>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김홍도 관</u> <u>련 연구 기관·단체, 대학 등에서</u> <u>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u> <u>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에게 예</u> <u>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u> <u>수 있다.</u></p> | <p><u>〈삭제〉</u></p> |
| <p><u>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u> <u>각 호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u> <u>부를 문화관광 사업을 주된 목적</u> <u>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u> <u>위탁 할 수 있고, 그 절차 등 필요</u> <u>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u> <u>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 <p><u>〈삭제〉</u></p> |
| <p><u>제8조 (생략)</u></p> | <p><u>제6조 (원안 제8조와 같음)</u></p> |